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 18호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상주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추진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하는 시정운영으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와 행정의 효율과 능률의 극대화 확보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협약의 체결에 따른 사전 동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상주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참조 :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화 : 054-537-7841, FAX : 054-535-9854,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sangjucounci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한 운용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내 용	비 고